

감 사 보 고 서

-2020년 법인카드 집행실태 점검-

2020. 10.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및 범위	1
3. 감사인원 및 기간	1
4. 감사중점사항	1
5. 감사결과 처리	2

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평	03
2. 지적사항 총괄	04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04
4. 모범 및 제도개선 사례	04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05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05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06

[별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현지조치사항 명세
3.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회의록 등)
4. 감사 증거자료 목록(증거자료는 별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행동강령 준수 실태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 기관운영 및 사업 등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지침 준수여부 및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부서 및 기관운영, 사업별 업무추진비
- 감사 대상기간 : 2019.9월 ~ 2020.7월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 H(차장), G(대리), P(대리)
- 감사기간
 - '20.8.14(금)~8.24(월) : 사전 감사자료 취합 및 검토
 - '20.8.25(화)~9.10(목) : 실지감사
 - '20.9.11(금)~9.25(금)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등 최종 결과보고

4. 감사중점사항

- 기관운영 및 사업 등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지침 준수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집행 불가 집행 건 점검
- 지출부 정밀 분석을 통한 횡령·유용 검토

□ 법인카드사용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문제점 개선

5. 감사결과 처리

□ 심의위원 ■■■■, ⊗⊗⊗, ✨✨✨, 상임감사 ◆◆◆, 감사실장 ❖❖❖, 감사인 ○○○ 6명이 참석한 감사결과심의회의에서 본 감사의 지적 사항 및 처분내용 등 최종 검토를 거쳐 2020.10.15.(목)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1. 총평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예술위원회 법인카드(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사용 전반 특정감사 중 ~~○○○~~ 업무, ~~○○○~~ 운영, 법인 ~~○○○~~·~~○○○~~ 발급 및 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상급자에게 허위보고 및 부당결정 등의 행위를 통해 의도적으로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발생한 ~~◆◆◆~~의 회계부정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횡령하고, 지출증빙서류나 지출부의 금액 또는 누계를 조작하여 횡령하는 등 부적정한 행위가 발생하여도 상호간에 견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장기간 동안 꾸준히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업무종사자들이 각종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대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제활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에서는 중요한 거래 및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 이전과 이후에 그 처리 내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그러한 업무활동이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요한 기록은 그와 관련된 적절한 문서와 정기적으로 대사되어야 함에도 적절한 통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 분립 원칙’에 따라 ~~◆◆◆~~ 임명 및 운용은 ~~○○○~~·~~○○○~~ 등을 분립하도록 하고 있고, 예술위『예산회계규정』 제52조(내부견제조직)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와 ~~○○○~~업무를 ~~◆◆◆~~ 한 사람에게 겸직시킬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나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결재, 처리, 담당자의 기록, 검토 업무를 분리하여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에 의하여 오류 또는 부정을 예방해야 했다.

☒☒☒는 해마다 자체감사 등을 통해 대동소이한 부정부패사건이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동일 또는 유사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등 기관의 관리책임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한편, 이러한 현상이 일회성인지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 등으로 예방·교정·적발차원에서의 대응이 모두 적절히 이루어져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의 예방으로 청렴환경 정착 및 윤리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합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시정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현지 조치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정	회수	기타								
7	3	3,890,200	3,230,200	3	660,000	-	660,000	-	-	2	-	-	-	1	-	1

* 변상명령액(3,230,200원)에는 허위 등기부등본 발령 관련 횡령 추정액 (1,682,200원) 포함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가. 소관 업무추진비 '개인 포인트'로 결제 뒤 거짓 품의(3명)

- 특정 카페(☒☒☒☒☒)에 본인 및 타인 명의의 회원정보로 포인트 선 결제 뒤 사적사용
- ('18년~'20.6) 소관 업무추진비 총 93만원 부적정 결제 및 횡령

나. 법인☒☒☒☒☒ 허위청구, 증빙서류 금액 및 누계 조작 횡령(1명)

- (법인 ☒☒☒☒) '16년 8월부터 '20년 3월까지 총 67회 1,278,000원 횡령
 - 실제 발급 매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 지출증빙서류 금액 및 누계 조작
- (법인 ☒☒☒☒☒) 위와 동일한 기간 및 수법으로 1,682,200원 횡령

- 횡령사실 인정, 부당·허위 발급 매수 및 개인 취득 금액 파악 불가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고발' 처분

4. 모범 및 제도개선 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원, 명)

일련 번호	감사대상 (관계대상자/부서)	건 명(지적사항)	처 분 요 구			조치 기한	감사자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	△△△ (□□□□부)	△△△ 사업추진비 횡령	경징계 이상	-	1	'20.11.06	◎◎◎◎, □□□□, ▲▲▲▲
			변상 명령	170,000	-	'20.12.06	
2	□□□□ (□□□□부)	부서 ◆◆추진비 및 □□□□변상 명령 발급 비용 횡령	중징계 (해임)	-	1	'20.11.06	
			변상 명령	1,378,000	-	'20.12.06	
3		법인 ◆◆◆◆ 발급 비용 횡령 정황에 따른 고발 조치 요구	고발	1,682,200	1	즉시	
4	◎◎◎ (×××××부)	□□□□ 운영비 횡령	중징계 이상	-	-	'20.11.06	
			시정 (회수)	660,000	1	'20.12.06	
5	□□□□부	『예산회계규정』 제52조(내부견제 조직) 의거, ○●○ 및 ○●○자의 업무가 분리 구분 되도록 시정 요구	시정	-	-	'20.11.06	
6		□□□□증명 및 △△△△△ 발급 관리대장 관리·감독을 철저 요구	시정	-	-	'20.11.06	
7	◎◎◎◎회	최근 3년 연속 매년 ★★사건 발생, 관리책임 미흡	주의 (기관경고)	-	-	'20.11.06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 분 내 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 공금횡령 및 배임	경징계 이상	□□□□부	일반직 I ★★	▨▨▨▨	
	해임	□□□□부	일반직 II ★★	◆◆◆	고발
	중징계 이상	×××××부	일반직 II ★★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 사항	금액	인원	감사관
1	예술위 ■■■■ (예술위 ■■■■)	공금 횡령	직무정지(대기발령)	1,378,000	1	⊗⊗⊗

[별 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현지조치사항 명세
3.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회의록 등)
4. 감사 증거자료 목록(증거자료는 별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고발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등 공금 횡령 및 배임

소 관 부 서 ☎☎☎☎☎, ㉔㉔㉔㉔㉔㉔

조 치 부 서 ☎☎☎☎☎, ㉔㉔㉔㉔㉔㉔

감 사 대 상 자 "갑" ☎☎☎(❖❖) / 일반직 I ○●

"을" ★★*(❖❖) / 일반직 II ○●

"병" ▼▼▼(❖❖) / 일반직 II ○●

1. 업무 개요

위 “갑”은 2013.9.10.부터 현재까지 ㉔㉔㉔㉔부와 ☎☎☎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이하 ◆◆◆) 문화예술진흥기금 ◆◆❖❖ 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을”은 2016.1.18.부터 현재까지 ㉔㉔㉔㉔㉔ 소속으로 ◆◆◆ 결의서 접수 및 지출증빙서 관리 등 ★★* 및 ★★*와 ★★*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병”은 2018.4.9.부터 현재까지 ☎☎☎☎☎ 소속으로 ★★*(★★*)의 ❖❖ 직무를 수행하면서 ★★* 운영에 필요한 비품, 다과 구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따르면,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와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원"이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감사원법」 제3조에 의거하여 ‘**○○○○○○○○○○**’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毀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예술위 「직무복무규정」 제4조(의무수행)에 의거, **◆◆◆** 직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공헌하여야 할 의무를 명심하고 청렴결백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원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윤리지침」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에서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고, 동 지침 제9조에서 임직원은 위원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원회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본부 및 부서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 점검한 결과, ① ~~※※※~~ 물품 구매 및 회계결산 업무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② 사건 관련자 중 ■■ 업무담당자 “을”은 ⊗⊗⊗·⊗⊗⊗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증명서 등 발급 매수를 부풀리거나, 지출증빙서류 금액 또는 누계 조작을 통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가. 업무추진비 ‘개인 포인트’로 선 결제 뒤 허위 지출품의·횡령

위 “갑”, “을”, “병” 세 사람은 나주시 빗가람동에 위치한 ‘▲▲▲▲▲’ 카페 (이하 업장)에 각자 관리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을”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업장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포인트 전환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선 결제 한 뒤, 이에 대한 집행대상과 집행내용을 거짓으로 지출결의서로 품의 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 까지 총 89만 원을 횡령하였다.

위 사람들에게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구한 뒤 업장의 매출정산기기(POS)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카드 결제한 내역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위 사람들의 회원 정보에 업무추진비가 포인트로 전환되어 적립된 사실을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이 적발하였다.

(1) “갑”의 경우

- 2018년 기관 ■■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음료 구입 등 3건에 대한 업무추진비 170,000원을 지급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주무부서장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위 사람은 음료 구입 금액을 부풀려 추후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커피 전문점에 본인 명의로 된 회원정보에 1회에 걸쳐 총 4만 원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선 결제 하였고,

- 또한 “을”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총 13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선 결제 한 뒤 회계서류에 영수증을 붙임하고 집행대상과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횡령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17만원을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하여 이를 “을”, “병”과 함께 사용하였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업무 업무추진비 허위 결제 내역

카드번호	사용일시	결의금액	집행장소(업종)	집행목적
	2018-01-25	40,000	\$\$\$\$% % % % (커피전문점)	
	2018-10-17	40,000	\$\$\$\$% % % % (커피전문점)	
	2018-12-26	90,000	\$\$\$\$% % % % (커피전문점)	

(2) “을”의 경우

- 2019년 2월 부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서 소진한 1건에 대한 업무추진비 100,000원을 지급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주무부서장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다.

- 그런데 위 사람은 추후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할 목적으로 2019.2.25. 해당 업무에 부서 업무추진비 100,000원을 본인 명의의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선 결제를 하고, 회계서류에 집행대상과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횡령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총 1회에 걸쳐 10만 원을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하여 이를 “갑”, “병” 과 함께 사용하였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서 업무추진비 허위 결제 내역

카드번호	사용일시	결의금액	집행장소	집행목적
	2019-02-25	100,000원	\$\$\$\$%\$\$% (커피전문점)	****&&&& 관련 차담회

(3) “병”의 경우

-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 다과 구입비를 매월 정산하면서 그 중 카페에서 음료 구입 등으로 업무추진비 12건, 총 660,000원을 지급하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후 주무부서장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다.

- 그런데 위 사람은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할 목적으로 “을”에게 부탁하여 임원실 다과 구입비를 중 매월 5만원씩 고정적으로 “을” 의 회원정보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선 결제 하였다.

- 이어서 회계서류에 영수증을 붙임하고 집행대상과 집행목적은 거짓으로 작성하여 횡령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66만 원을 횡령한 뒤 이를 “갑”, “을” 과 함께 사용하였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운영 업무추진비 허위 결제 내역

카드번호	사용일시	결의금액	집행장소	집행목적
ㄱㄱㄱㄱㄱㄱ	2019-01-08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19-02-12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19-05-09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19-07-12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19-08-14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19-09-20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19-11-22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19-12-19	11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20-02-17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20-03-09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20-04-02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ㄱㄱㄱㄱㄱㄱ	2020-05-12	50,000원	(커피전문점)	㉸㉸㉸및 내방객 방문접대 다과구입

나. ◆◆◆◆◆◆◆◆◆◆ 지출증빙서류 금액 또는 누계 조작을 통한 횡령

“을” 은 2016.2.1.부터 2020.4.19.까지 기관의 ◆◆◆◆◆◆ 및 ◆◆◆◆◆◆이 필요한 경우 이를 광주□□□ 나주□□□에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에서는 ◆◆◆◆◆◆ 및 ◆◆◆◆◆◆ 발급 시 비용지불을 현금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재량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개인비용으로 선 결제하고 이에 대한 지불영수증을 수령하여 사후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는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받도록 업무관리를 하였다. 이에 대한 발급 정산 내역(2016~2020)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증명서	등본	기타	합계
'16.2.1.부터 '20.4.19.까지 환급 내역	1,814,400	1,682,200	83,740	3,580,340

그런데, “을”은 에서 구매금액 작성 칸이 비어있는 ‘빈 영수증’을 다량으로 수령할 수 있고, 본인의 보고 외에는 부서장이 실제 발급 수량을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6.8.29.부터 실제로는 증명서 15장(15,000원)을 발급하였으나 발급 매수를 부풀려 빈 영수증에 26,000원으로 구매금액을 부풀리고 환급 받았고, 2016.9.27.에는 증명서를 발급 사실이 없음에도 15,000원을 허위 청구하였다.

“을”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6.8.29.부터 2020.3.19.까지 증명서 구매에 대한 지출결의서 품의를 하면서 허위청구, 증빙서류의 금액 및 누계를 조작하여 본인 계좌로 송금시키는 수법으로 총 75회 중 67회에 걸쳐 1,278,000원을 환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의 계좌 거래내역을 정열, 지출부 분석과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증명서 발급 매수와 내부적으로 청구한 발급 매수를 대조한 결과 부당청구의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4], [별표4]와 같다.

[표4] 증명서 발급 및 허위 청구내역

(단위 : 건, 원)

연도	지출품의를 통한 청구내역			법원행정처 확인내역		횡령액 (A-B)
	결의서 품의 건수	결의서상 발급 매수	청구액(A)	실제 발급 매수	실제 발급액(B)	
2016	12	215	215,200	113	113,200	102,000
2017	34	789	789,200	179	179,200	610,000
2018	17	485	485,000	138	138,000	347,000
2019	11	295	295,000	106	106,000	189,000
2020	1	30	30,000	0	0	30,000
합계	75	1,814	1,814,400	536	536,400	1,278,000

또한 “을” 은 □□□□□□ 발급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몇 회에 걸쳐 얼마의 금액을 횡령하였는가는 특정할 수 없어 수사의뢰가 불가피하며, “을”의 최근 5년간 법인 □□□□□□□□ 발급 지출결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발급 및 청구내역

(단위 : 건, 원)

연도	결의서 품의건수	결의서상 발급매수	청구 및 지급액
2016	17	210	210,400
2017	33	744	744,400
2018	18	472	472,400
2019	10	255	255,000
합계	78	1,681	1,682,200

4. 관련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갑” 과 “병” 의 경우, 위 와 같이 부정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비난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였고, “을”의 경우에도 부서 업무추진비의 개인 취득 사실과 ▲▲▲▲▲·▲▲▲▲ 구매 금액 허위청구, 지출증빙서류 금액 및 누계를 조작하여 개인 계좌로 청구하고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징계요구의 양정

위 세 사람의 비위행위는 예술위 『인사관리규정』 제44조(징계)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6호, 『직무복무규정』 제4조(의무수행) 제3항,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제1항 및 제9조 제2항, 『행동강령』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8조(징계의 양정) 제1항 ‘징계양정 기준표’에 근거하여 징계 처분요구의 양정을 결정하였다.

한편 「형법」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을 판단할 경우 ‘업무’에는 위탁관계에 의한 타인의 재물보관을 내용으로 하며, 그 업무가 주된 업무나 부수적인 업무를 불문하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된다.

“갑” 과 “병”은 담당 운영비를 위탁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금횡령에 포함될 것이며, 특히 이러한 비위행위에 있어서 “갑”, “을”, “병”은 이를 함께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 발급 관련 “을”의 비위행위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해당됨에 따라 예술위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3조(고발대상 및 결정) 제2항 및 제3호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마다 감사 등을 통해 대동소이한 부정부패사건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바, 예술위원회에 상당한 주의가(기관경고)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경영진은 이러한 현상이 일회성인지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여 공금 횡령 등 회계부정의 개연성을 훨씬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공직자로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예술위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비위행위자에 대해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징계를

하시고, 횡령액 2,208,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변상 / 시정(회수) / 징계]

현 부서	대상자	횡령액	처분내용	징계요구
△△△부	△△△	170,000원	변상명령	경징계 이상
△△△부	㉠㉠㉠	1,378,000원	변상명령	해임
㉠㉠㉠부	⊗⊗⊗	660,000원	시정(회수)	중징계 이상
계	3명	2,208,000원		

② 비위행위자 중 ‘⊗⊗⊗’에 대해서는 횡령액이 명확히 밝혀진 법인인감증명서 부당 청구액 이외, 법인등기부 등본 지출결의서 위조 및 허위 청구로 추가 횡령한 (1,682,200원) 정황이 있는 바, 예술위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3조(고발대상 및 결정)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 위반으로 ‘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③ 한편으로 본 사건의 비위행위자 중 회계 및 출납업무 담당자 2명의 경우, 비록 소액의 지출행위이지만 예술위 『예산회계규정』 제52조(내부건제조직)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서에서는 ⊗⊗⊗⊗⊗담당자, ⊗⊗⊗⊗⊗담당자를 따로 두어야 함’ 에도 해당자들에게 구매(지출)업무를 겸직하여 비위행위가 발생된 바, 해당규정에 따라 ‘⊗⊗⊗⊗⊗’와 ‘⊗⊗⊗⊗⊗ 등 ⊗⊗⊗담당자’의 업무가 분리 구분 되도록 관련 업무를 시정하시기 바라며, [시정]

④ ㉠㉠㉠㉠㉠증명 및 ㉠㉠㉠㉠㉠ 발급 등 그 처리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⑤ 아울러 ◆◆◆◆는 기관 내 부정부패사건 발생이 지속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기관 내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별표1> 증거자료

“갑”의 경우
2018.01.25. 포인트 결제 4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18.10.17. 포인트 결제 40,000원 입금내역 (“갑” 회원정보)

2018.12.26. 포인트 결제 9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별표2> 증거자료

“을”의 경우
2019.02.25. 포인트 결제 10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별표3> 증거자료

“병”의 경우
2019.01.08.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19.02.12.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19.05.09.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19.07.12.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19.08.14.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19.09.20.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19.11.22.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19.12.19. 포인트 결제 11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20.02.17.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20.03.09.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20.04.02.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2020.05.12. 포인트 결제 50,000원 입금내역 (“을” 회원정보)

<별표4> ◆◆◆◆◆ 발급내역 허위정산에 따른 횡령 명세(2016~2020)

연번	지출일	지출결의일	발급내역 보고매수	환급액	법원행정처 확인 ●●●증명서 발급매수	차액 (횡령액)
1	2016-04-07	2016-04-06	16	16,000	16	0
2	2016-05-17	2016-05-17	20	20,000	20	0
3	2016-06-30	2016-06-29	15	15,000	15	0
4	2016-08-30	2016-08-29	26	26,000	15	11,000
5	2016-10-13	2016-10-13	15	15,000	0	15,000
6	2016-10-13	2016-10-13	26	26,000	26	0
7	2016-10-13	2016-10-13	1	1,200	1	0
8	2016-11-08	2016-11-04	15	15,000	0	15,000
9	2016-11-08	2016-11-04	11	11,000	0	11,000
10	2016-12-07	2016-12-07	20	20,000	0	20,000
11	2016-12-07	2016-12-07	25	25,000	20	5,000
12	2016-12-21	2016-12-20	25	25,000	0	25,000
13	2017-01-26	2017-01-26	25	25,000	0	25,000
14	2017-01-26	2017-01-26	20	20,000	15	5,000
15	2017-01-26	2017-01-26	35	35,000	30	5,000
16	2017-01-26	2017-01-26	20	20,000	0	20,000
17	2017-02-21	2017-02-20	15	15,000	0	15,000
18	2017-02-21	2017-02-20	20	20,000	0	20,000
19	2017-02-21	2017-02-20	30	30,000	20	10,000
20	2017-03-30	2017-03-28	15	15,000	0	15,000
21	2017-03-30	2017-03-28	25	25,000	0	25,000
22	2017-03-30	2017-03-28	20	20,000	20	0
23	2017-04-18	2017-04-14	15	15,000	0	15,000
24	2017-04-18	2017-04-14	25	25,000	11	14,000
25	2017-04-18	2017-04-14	1	1,200	1	0
26	2017-05-10	2017-05-08	30	30,000	0	30,000
27	2017-05-10	2017-05-08	25	25,000	0	25,000
28	2017-06-12	2017-06-12	30	30,000	0	30,000
29	2017-06-12	2017-06-12	25	25,000	0	25,000
30	2017-06-12	2017-06-12	25	25,000	6	19,000
31	2017-07-06	2017-07-05	25	25,000	0	25,000
32	2017-07-06	2017-07-05	30	30,000	0	30,000
33	2017-07-06	2017-07-05	20	20,000	0	20,000
34	2017-07-25	2017-07-21	15	15,000	0	15,000
35	2017-07-25	2017-07-21	18	18,000	9	9,000
36	2017-07-25	2017-07-21	20	20,000	7	13,000

연번	지출일	지출결의일	발급내역 보고매수	환급액	법원행정처 확인 ●●●증명서 발급매수	차액 (횡령액)
37	2017-08-03	2017-08-03	30	30,000	0	30,000
38	2017-08-03	2017-08-03	35	35,000	25	10,000
39	2017-08-24	2017-08-22	25	25,000	0	25,000
40	2017-08-24	2017-08-22	20	20,000	10	10,000
41	2017-10-17	2017-10-17	25	25,000	0	25,000
42	2017-10-17	2017-10-17	20	20,000	0	20,000
43	2017-11-23	2017-11-23	30	30,000	0	30,000
44	2017-11-23	2017-11-23	25	25,000	0	25,000
45	2017-12-19	2017-12-15	10	10,000	0	10,000
46	2017-12-19	2017-12-15	40	40,000	25	15,000
47	2018-02-08	2018-02-07	60	60,000	45	15,000
48	2018-02-08	2018-02-07	35	35,000	0	35,000
49	2018-02-20	2018-02-20	30	30,000	0	30,000
50	2018-02-20	2018-02-20	25	25,000	15	10,000
51	2018-04-03	2018-03-30	30	30,000	0	30,000
52	2018-04-03	2018-03-30	25	25,000	8	17,000
53	2018-04-19	2018-04-18	30	30,000	0	30,000
54	2018-04-19	2018-04-18	30	30,000	15	15,000
55	2018-07-03	2018-07-02	35	35,000	0	35,000
56	2018-07-03	2018-07-02	30	30,000	10	20,000
57	2018-08-28	2018-08-28	30	30,000	0	30,000
58	2018-08-28	2018-08-28	10	10,000	0	10,000
59	2018-10-23	2018-10-18	30	30,000	0	30,000
60	2018-10-23	2018-10-18	20	20,000	0	20,000
61	2018-10-25	2018-10-25	20	20,000	15	5,000
62	2018-11-29	2018-11-27	15	15,000	0	15,000
63	2018-11-29	2018-11-27	30	30,000	30	0
64	2019-01-24	2019-01-22	30	30,000	40	-10,000
65	2019-01-24	2019-01-22	35	35,000	0	35,000
66	2019-02-19	2019-02-15	25	25,000	0	25,000
67	2019-03-21	2019-03-20	25	25,000	0	25,000
68	2019-03-21	2019-03-20	30	30,000	16	14,000
69	2019-05-09	2019-05-09	25	25,000	0	25,000
70	2019-07-16	2019-07-15	30	30,000	20	10,000
71	2019-07-16	2019-07-15	25	25,000	0	25,000
72	2019-09-10	2019-09-09	25	25,000	15	10,000
73	2019-11-07	2019-11-07	25	25,000	15	10,000

연번	지출일	지출결의일	발급내역 보고매수	환급액	법원행정처 확인 ●●●증명서 발급매수	차액 (횡령액)
74	2019-11-13	2019-12-24	20	20,000	0	20,000
75	2020-03-24	2020-03-19	30	30,000	0	30,000
합계			1,814	1,814,400	536	1,278,000

<별첨 2>

현 지 조 치 사 항

□ 감사사항명 : 2020년 법인카드 집행 실태 점검

□ 현지조치사항 명세

(단위 : 건, 명, 원)

일련 번호	소관부서	조치부서	제 목	금액
0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 ○ 혐의내용 : 위 사람은 소관부서의 담당직무 수행과정에서 심각한 비위행위(공금 횡령 등) 혐의가 적발됨. ○ 현지조치사항 : 위 사람의 직무는 ㉔㉔(㉔㉔) 담당자로서 혐의사안에 비취어 해당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으로 직무정지(대기발령 포함) 조치 요구 	비공개

2020.9.9.(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